

제주지방법원 2021. 10. 27 선고 2020나1658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제주지방법원 2021. 10. 27 선고 2020나16587 판결

제주지방법원 2020. 10. 16 선고 2019가단50825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현덕규

피고, 피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호

변론종결 2021. 7. 21.

판결선고 2021. 10. 27.

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. 10. 16. 선고 2019가단50825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 피고와 D 사이에 2018. 1. 2.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D에게 제주지방법원 등기와 2018. 1. 2. 접수 제4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강 건, 판사 정양순, 판사 이범휘

별지

부동산 목록

1.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[]
대
3395㎡ 중
피고 [] 지분 3395분의 483

2.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[] 동
[도로명주소]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[]
위 지상
철근콘크리트구조
평층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
1층 단독주택 60.18㎡
2층 단독주택 39.48㎡

